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(조배숙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36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1. 7.

발의자 : 조배숙 · 조지연 · 송석준
장동혁 · 유상범 · 박충권
곽규택 · 신동욱 · 김은혜
박준태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“N번방 사건”, “딥페이크 사건” 등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사이버 범죄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바, 해외 서버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범죄를 엄단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소재한 전자증거를 신속히 수집하기 위한 국가 간의 다자협약인 유럽평의회 「사이버 범죄협약(일명 “부다페스트 협약”)」(2004년 발효)에 가입 할 필요성이 있음.

위 협약은 제16조, 제17조에서 수사단계에서 전자증거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의 보전을 요청하는 “보전요청”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바, 위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이행입법으로서 보전요청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검사는 압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 요한 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가 소유, 소지, 또는 보관하고 있는 정보 중 관련 부분을 한정하여 60일 간 보전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음(안 제215조의2제1항).

나.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보전요청서를 받아 보전을 요청하거나, 증거의 멸실이 임박하여 보전요청서를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때에는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을 할 수 있음(안 제215조의2제2항 및 제3항).

다.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보전조치를 취하고 그 조치 결과와 목록을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(안 제215조의2제5항).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5조의2(보전요청 등) ① 검사는 압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가 소유, 소지, 또는 보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관련된 부분을 한정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당해 정보가 삭제·변경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서면(이하 “보전요청서”라 한다)으로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보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보전요청서를 발부받아 제1항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하거나 보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이 임박하여 제2항에 따라 보전요청서를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때에는 직권으로 제1항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전을 서

면(이하 “긴급보전요청서”라 한다)으로 요청할 수 있다.

④ 사법경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을 요청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,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시 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당해 정보가 삭제·변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고, 정보를 보전한 경우 그 목록을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당해 정보에 관해 압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전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.

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전기간 내 보전 대상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(「통신비밀보호법」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)이 집행되지 않거나 보전요청이 취소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해제하고, 그 해제사실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서 또는 긴급보전요청서를 직접 제시·교부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해 송부하는 방법으로 보전요청을 할 수 있다.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보전요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다.

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사실 및 보전된 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제215조의2(보전요청 등) ① 검사는 <u>압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 요한 때에는 「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가 소유, 소지, 또는 보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정보 중 관련된 부분을 한정하여 60일의 범위 내에서 당해 정보가 삭제·변경되지 않도록 보전할 것을 서면(이하 “보전요청서”라 한다)으로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해 보전의 연장을 요청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<u>보전요청서를 발부받아 제1항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1항에 따른 보전을 요청하거나 보전의 연장을 요청</u></p>

할 수 있다.

③ 사법경찰관은 증거의 멸실이
임박하여 제2항에 따라 보전요
청서를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
없는 긴급한 때에는 직권으로
제1항에서 정한 정보통신서비
스 제공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
른 보전을 서면(이하 “긴급보전
요청서”라 한다)으로 요청할 수
있다.

④ 사법경찰관이 제3항의 규정에
의하여 보전을 요청한 경우에는
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
고,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즉
시 요청을 취소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요청을
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
즉시 당해 정보가 삭제·변경되
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, 그
조치 결과를 즉시 검사 또는 사
법경찰관에게 통보하고, 정보를
보전한 경우 그 목록을 작성하
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.

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
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당해 정
보에 관해 압수 또는 통신사실

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필요가
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체
없이 서면으로 보전요청을 취소
하여야 한다.

⑦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
항부터 제3항까지의 보전기간
내 보전 대상 정보에 대한 압수
수색 영장(「통신비밀보호법」
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
료 제공요청 허가서를 포함한
다)이 집행되지 않거나 보전요
청이 취소된 경우 제1항에 따른
조치를 해제하고, 그 해제사실
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
통보하여야 한다.

⑧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보
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
청서 또는 긴급보전요청서를 직
접 제시·교부하거나 우편 또는
전자적 수단에 의해 송부하는
방법으로 보전요청을 할 수 있
다.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보
전요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같
다.

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
보전요청을 받은 정보통신サービ

스 제공자는 그 사실 및 보전된
정보에 관한 내용을 누설하여서
는 아니 된다.